

여기에 사용한 색상은?



2019년 지역균형발전과 박주언사무관 제작입니다^^*
나중에 온천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생기면 얼마든지 수정·사용하세요
타 부서 및 타 팀 공유는 불가합니다.(발표자료도 PDF로 넘기세요!!)
출력은 2페이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온천 법령의 이해

2020. 4.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목차 *contents*



총론



온천의 이용 및 개발



온천의 보전 및 관리



현황 및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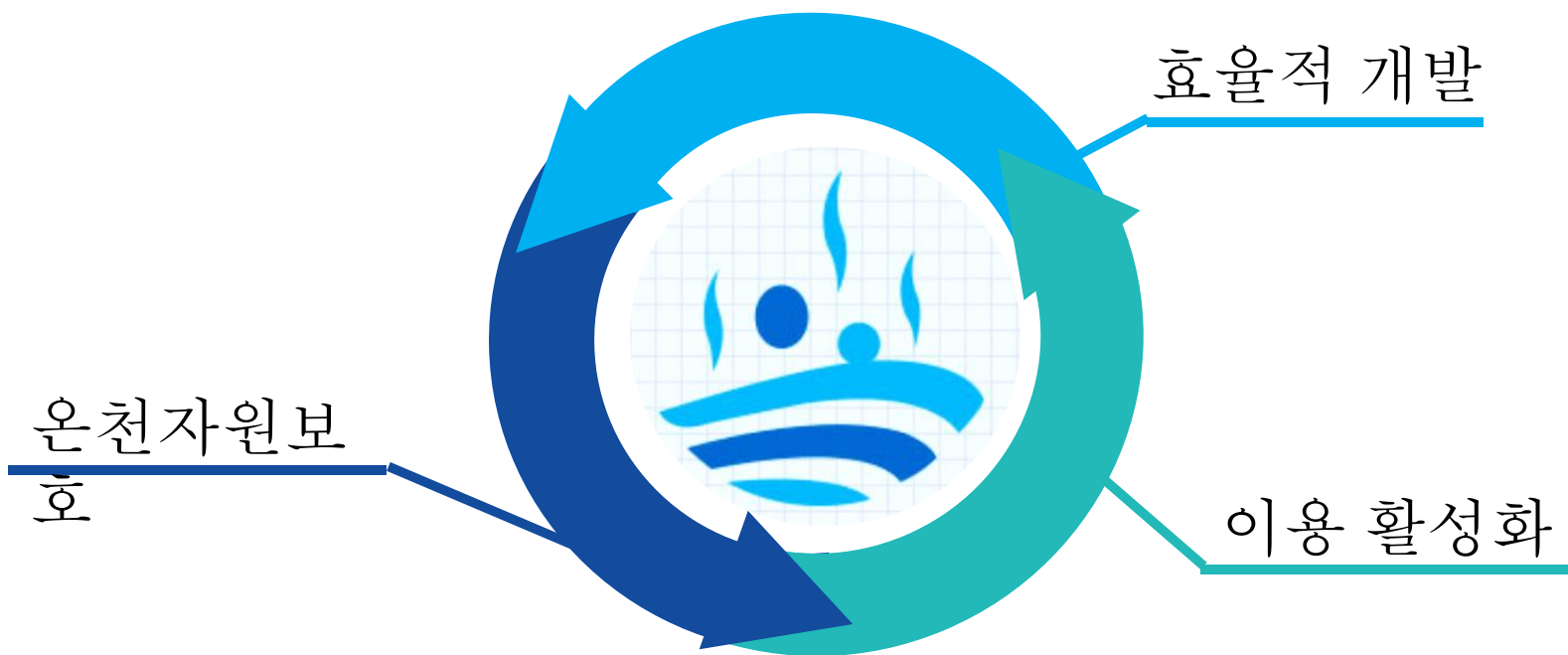
총론

1. 목적
2. 온천의 정의
3. 지하수법과의 관계
4. 온천우선이용권자
5. 국가 및 지자체 책무
6. 온천발전종합계획



1. 목적(제1조)

- ◆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





2. 온천의 정의(제2조)

◆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 질산성질소($\text{NO}_3\text{-N}$), 테트라클로로에틸렌(C_2Cl_4), 트리클로로에틸렌(C_2HCl_3)

◆ 해외의 온천 정의 요건

일본 : 25도 이상의 온수 또는 유효성분(유황 등 19개 성분)

독일·체코 : 20도 이상 + 성분기준

헝가리 : 30도 이상 + 성분기준



3. 지하수법과의 관계(제8조, 제13조)

- ◆ 온천지구에 대한 「지하수법」 일부 규정 적용 배제(제8조)

§7(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7의 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7의 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8(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8의 2(신고의 효력 상실), § 9조(준공신고), §9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9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9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9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9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9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10(허가의 취소 등), §17(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20(수질검사 등), §21(출입조사 등)

-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지하수법」 준용(제13조)

- ◆ 제2조 제1호(정의) 지하수 :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개발), 「공중위생관리법」(수질), 먹는물 관리법(음용)



4. 온천우선이용권자(제23조)

◆ (정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 + 온천공 토지소유자

* 온천우선이용권자만 승계 가능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

* 차순위 온천우선이용권자

◆ (연혁) 신고자, 신고 수리자, 신고 수리자 및 온천공 토지소유권자(임차권 포함)

◆ (권리) 온천지구 굴착허가, 우선 이용허가, 설치비용 용자·알선,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개발계획 신청(보충적)



5. 국가 및 지자체 책무(제5조)

- ◆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 및 시책 수립·추진
- ◆ (지자체 책무) 온천발견신고 수리 이후, 원활한 개발을 지원, 효율적 관리 및 보호 이행

행안부장관

보양온천 승인, 온천도시 지정

시·도지사

온천공 보호구역 승인,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장·군수

굴착허가, 이용허가, 신고수리, 온천공보호구역 해제



6. 온천발전종합계획(제4조)

- ◆ (보존관리) 온천장 수질 강화, 온천자원관측 고도화, 미개발 지구 관리 강화, 온천자원조사 내실화
- ◆ (의료문화) 보양온천 확대, 의료관광 활성화, 힐링온천 10선, 온천도시 지정
- ◆ (산업화) 온천대축제 개선, 사업화 지원, 열에너지 활용, 산학연 협력 강화
- ◆ (기반조성) 의료적 활용 토대, 성분 체계적 관리, 온천전문가 육성

- ◆ 온천자원 관측 시스템 : 51개소 설치(아산시, 충주시, 문경시 자체 시스템 운용)
- ◆ 보양온천 : 10개소 승인(충주 중원온천, 전남 화순 도곡온천, 제주 삼매봉 온천)
- ◆ 온천대축제 : 2007년부터 매년 개최
(’19년 전북 고창 석정온천, ’20년 강원 고성 원암온천)



온천의 이용 및 개발

1. 굴착허가
2. 온천발견신고 수리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4. 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
5. 온천이용허가



1. 굴착허가(제12조)

- ◆ (허가권자) 시장·군수
- ◆ (허가대상) 모든 온천 굴착(온천공 확대 포함)
 - * 지하수개발에 따른 온천 발견 경우, 온천굴착신고 필요(부존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 ◆ (신청서류) 굴착사용 동의서(1년 이상, 타인소유 토지 굴착시), 지적도 또는 임야도,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부존조사 결과보고서
- ◆ 온천지구 내에서 굴착허가 제한(제15조)
 -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
 - * 공공시설 업무용, 농업용수 공급용, 온천이용허가자의 이용, 1일 양수량 30톤 이내



1. 굴착허가(제12조)

◆ 불허가 사유

- ◆ 토지의 전부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도 받지 못한 경우
-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결과 온천 부존가능성이 없는 경우
- ◆ 기존 온천공과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온천공 확대, 보조공 제외)
- ◆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
- ◆ 「국토계획법」 상 공공사업 지장 우려, 온천법 또는 다른 법령 위반



1. 굴착허가(제12조의 2, 제13조)

- ◆ (이행보증금 예치) 굴착허가, 온천이용허가, 온천발견 신고를 하려는 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 (원상회복 의무) 온천 미발견 또는 굴착허가의 실효 또는 취소, 온천이용허가 실효 또는 취소, 온천발견 신고의 미수리 또는 신고 수리 취소 등
- ◆ (원상회복 명령) 온천지구에서 굴착허가 없이 굴착한 경우
- ◆ (원상회복 절차·방법) 「지하수법」 제15조 준용 * 원상복구 예외(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벌칙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하거나 굴착 미신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32조)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37조)



2. 온천발견신고 수리(제21조)

- ◆ (수리권자) 시장·군수
- ◆ (신청서류) 온천공 검사보고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 온천공 발견 위치, 발견경위, 발견내용(온천공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
- ◆ (수리기준) 온도(섭씨 25도 이상) 및 성분기준, 1일 적정 양수량 300톤 이상, 인근 온천·지하수공 영향 유무, 환경오염, 주변여건, 토지소유 여부 등
- ◆ (수리제한) 기존 온천공과 1km 이내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 공공사업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
- ◆ (중복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선순위자 우선처리



2. 온천발견신고 수리(제21조)

- ◆ (수리효과) 온천우선이용권자의 토지굴착허가, 우선이용허가 가능
- ◆ (반려조건) 검사비용 미납부, 온천발견과 관련한 법령 위반
- ◆ (신고수리 취소) 신고사실이 다른 경우, 개발의사가 없는 경우, 3년 이내 미신청 (3년 1회 유예 가능),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해제, 개발계획 취소
 - * (법 제21조제4항) 시장·군수는 각 호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온천지구 해제 절차) 발견신고 수리 취소(제21조), 보호지구 취소(제10조)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제5조)

- ◆ (승인권자) 시·도지사
- ◆ (지정요건) 30,000㎡ 이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온천자원평가조사)
- ◆ (지정효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해제, 토지용도 변경 필요
- ◆ (지정기준) 1일 적정 양수량, 소규모 온천개발 필요성·적합성(기존온천 여부 등)
 - * 온천원보호지구 미해당,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 토지가 50% 초과
- ◆ (지정고시)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온천공보호구역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지정사유, 지형도면 기재
 - * 신고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제5조)

◆ 지정해제 요건

- ◆ 온천원 고갈
- ◆ 개발·이용 가치 하락
- ◆ 개발사업 중단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환경·미관 훼손
- ◆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 미시행*(6개월 내 1회 연장 가능)
* 시점 : 개발사업의 시행(제10조의4), 토지소유권 100% 확보(부담금 납부 완료)

- ◆ (지정해제권자) 시장·군수 / 단,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주민의견 청취 필요



4. 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제10조)

◆ (승인권자) 시·도지사

* 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 수립·승인, 신청 이후 60일 이내 승인

◆ (계획요건) 30,000㎡ 이상

◆ (승인기준) 적정양수량, 효율적 시설배치, 주변환경, 지역개발 연계, 수질악화 등

◆ (변경승인 예외) 전체 면적의 10% 범위에서 해당 면적의 증감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시·도, 시·군·구)



4. 온천개발계획 수립 · 승인(제10의 2조)

- ◆ (인·허가 의제) 「건축법」, 「골재채취법」 등 총 29개 법률(30일 협의 간주제)
- ◆ (보호지구 지정) 개발계획 예정지로부터 1km 이내(지하수보전구역 해제)
 - 단, 온천개발계획 취소시 온천원보호지구도 지정 해제, 대도시특례도 동시 적용

* 관보 고시,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보호구역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지정사유, 지형도면 기재
- ◆ (개발면적) 66.2m^2 x 일일 적정 양수량(톤)
 -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 소유일 경우 100% 추가 기능



4. 온천개발계획 수립 · 승인(제10조)

-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 ◆ (개발계획 시행) 토지 수용·사용, 토지보상법 및 국토계획법 준용
- ◆ (승인취소 요건) 온천원 고갈(전문검사), 가치 하락, 개발 중단, 2년 이내 미시행
(6개월내 1회 연장 가능)

* 취소요청 :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주민의견 청취

- ◆ (미착수 시점) 「토지보상법」에 따른 고시 시점(법 제10조 제4항) 등
- ◆ (동력장치 설치) 시장·군수 허가, 수문관측시설 동시 설치(수위, 유량, 온도계)



5. 온천이용허가(제16조)

- ◆ (허가권자) 시장·군수
- ◆ (신청서류) 온천이용계획서, 수질검사서,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 공급계약서
- ◆ (불허가 조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공급계약 미체결, 온천지구 외 신청
(개발계획 포함시 가능), 성분기준 미충족, 온천장 수질기준 미충족,
온천고갈, 적정 양수량 초과, 다른 법령 위반 등
- ◆ (허가량 결정) 시장·군수가 적정 양수량 범위 내에서 시설규모 등 고려



5. 온천이용허가(제16조)

- ◆ (이용허가 대상)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 제공
 - * 난방·에너지시설, 산업·공중시설(양어, 온실,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 ◆ (허가조건) 유효기간은 5년, 5년 단위 연장(온천자원조사결과 반영, 기간 및 수량 조정)
- ◆ (일시적 이용허가) 온천우선이용권자 + 온천이용시설을 갖춘, 온천지구 지정시
- ◆ (의제처리) 숙박·목욕장업 등 5개 인허가(30일 협의간주제)
- ◆ (행위제한) 온천허가 받은 것처럼 행위, 거짓과장 표시광고, 온천표시



5. 온천이용허가(제16조)

- ◆ (취소 및 제한) 보건상 위생상 위해,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 위해 예방 및 시설개선 조치 명령 가능
- ◆ (공동급수) 자격요건, 사용료 등을 조례로 규정(21개 지자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수원시·이천시·화성시), 강원도(속초시·양양군),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도(고창군·김제시·순창군), 전남도(구례군·화순군),
경북도(문경시·영주시·예천군·울진군), 경남도(거창군·창녕군·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 ◆ (온천검사 의뢰) 시장·군수는 굴착허가, 동력장치설치허가, 온천이용허가를 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 의뢰 가능



온천의 보전 및 관리

1. 수질 및 성분검사
2. 온천자원 관리
3. 보양온천
4. 온천도시
5. 온천전문검사기관
6. 제도개선 추진



1. 수질 및 성분 검사(제17조, 제19조)

◆ (온천목욕장) 총대장균군

* 공중위생관리법 : 총대장균군, 색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수소이온농도, 레지오넬라균, 유리잔류염소농도

◆ (수질검사) 시장·군수(보건환경연구원), 1년, 인체유해 여부(음용 적합)

◆ (성분검사) 시장·군수(지질자원연구원), 5년(유황·탄산 1년), 17개 성분

◆ (게시의무) 수질 및 성분검사 결과, 온도, 금기증, 주의사항, 치료효과 등

◆ (행정조치) 재검사(3개월 이내), 이용허가 취소



2. 온천자원 보전·관리(법24조)

- ◆ (보전조치) 시장·군수, 시설개선·오염방지 명령, 온천자원조사 실시
- ◆ (온천자원조사) 시장·군수는 이용허가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수질·성분 변화, 부존량 및 부존범위 조사
 - * 온천자원조사 미이행시 발견신고 수리 및 이용허가 연장 불가
- ◆ (자원관측장비) 행안부장관, 관측망 설치(지구별 1개 이상), 수위 및 이용량 조사
 - * 현재 51개 설치, 충남 아산시 온천공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 우수온천에 집중 설치(미사용공 활용), 수위센서 교체, 유지보수 강화 등
- ◆ (출입검사) 시장·군수 소속공무원, 온천시설 검사(허가량 초과, 과장광고)



3. 보양온천(법 제9조)

- ◆ (승인권자) 행안부장관
- ◆ (지정기준) 온천수, 온천시설, 온천환경 고려
 - * 온천수 : 35도 이상, 총고용물 1,000mg, 유황·탄산 함유
 - * 온천시설 : 건강시설(상담·응급실, 수영장 등), 기본시설(온천욕장 등), 부대시설(숙박·의료)
 - * 온천환경 : 야외공기 청정도, 경관, 교통 등 고려
- ◆ (지정현황) 2009년 이후 10개 시설(조건부 3개소)
 - ◆ 일본 보양온천지 : 1954년부터 94개소 지정
 - 환경성에서 3,000여개 온천지 중에서 온천수, 주변환경, 의료인 등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지정
 - 유후인 온천(오이타현), 스카유 온천(아오모리현, 국민보양온천지 제1호) 이 대표적인 보양온천지
 - ◆ 국민 보건온천지 : 보양온천지 중에서 보건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지정(온천센터 등 21개소)



4. 온천도시(법 제9조2)

- ◆ (지정권자) 행안부장관
- ◆ (지정조건)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 지역
- ◆ (지정현황) 연구용역('18년),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 (유사사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문화부)
* '18년 경남(산청·고성 등), '19년 충북(충주·제천)
- ◆ (지정절차) 시장·군수 신청(시·도지사 협의), 공모제
- ◆ (지정기준) 온도 및 성분 및 실적 우수, 지정계획 우수 등



5. 온천전문검사기관(법 제7조)

- ◆ (등록기준) 전문인력 4명, 장비
- ◆ (상급인력) 지질 및 지반기술사, 지질전공, 온천개발관리업무 중 1명
- ◆ (중급인력) 지질 및 지구물리 전공 2명, 화학 전공 1명
- ◆ (장비기준) 물리탐사 및 검층 장비, 수질측정장비, 수위 및 수량 측정장비 등
- ◆ (등록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10개 기관



6. 제도개선 추진

- ◆ (온천법)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 (온천법 시행령)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온천이용 확대, 온천도시 지정기준 마련, 온천정보에 대한 일반인 공개 근거 마련
- ◆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목욕장 수질기준 상향(레지오넬라균, 염소소독)
- ◆ 온천개발 제한 강화(온도기준, 취소 규정) 등 검토



5. 기타

- ◆ (종사자 교육) 연간 4시간, 「공중위생관리법」 위생교육 면제(온천협회 위탁)
- ◆ (온천협회) 종사자 교육, 관측장비 수탁(2007년 인가)
- ◆ (대도시 특례) 인구 50만이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인정
- ◆ (시정요구) 행안부장관은 지자체 인허가 등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 ◆ (청문) 굴착허가의 취소,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 ◆ (수수료) 온천법 시행령에 한도 규정(수질·성분검사는 조례)
- ◆ (온천대축제) 2007년부터 지속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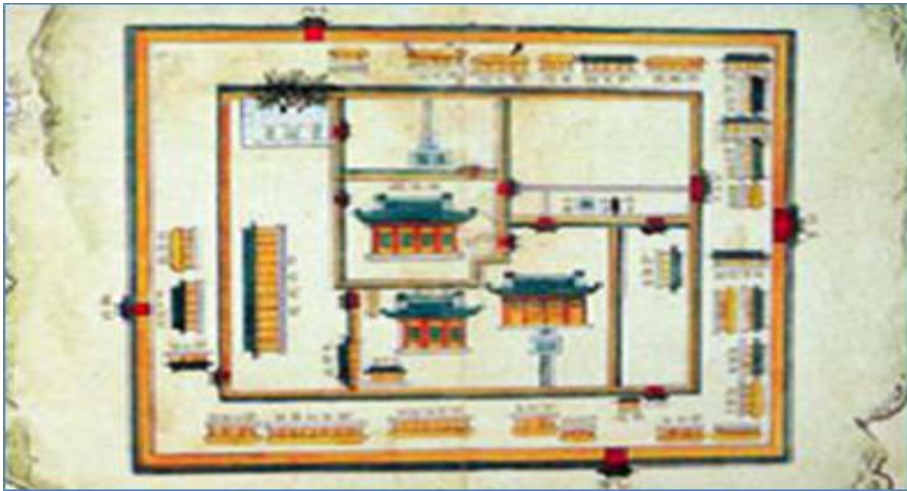
현황 및 최근 동향

1. 온천의 역사
2. 온천 현황
3. 온천 관련 주요 동향
4. 국내 우수사례
5. 해외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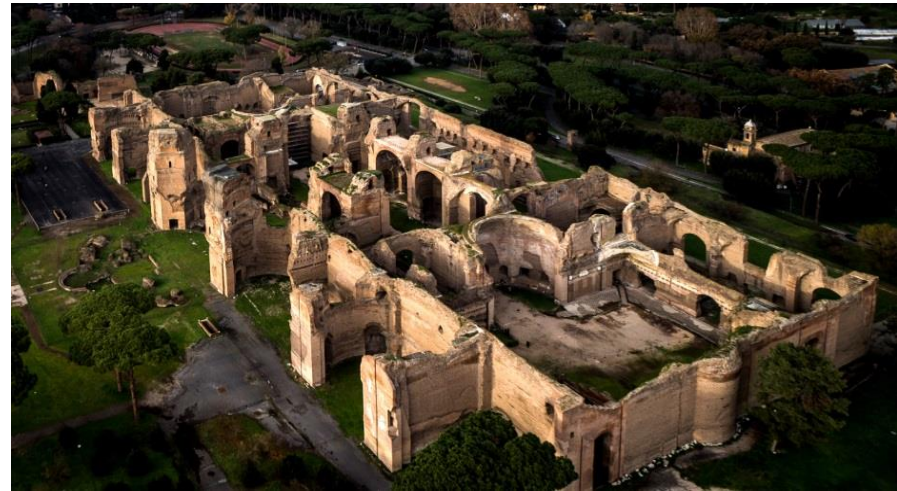
1. 온천의 역사

조선, 온궁



조선 태조, 세종, 현종 등 이용(약 100여칸 규모)
피부병, 안질, 풍질 등의 치료에 효과적
조선말까지 운영
현재 온양관광호텔 부지

로마, 카라칼라 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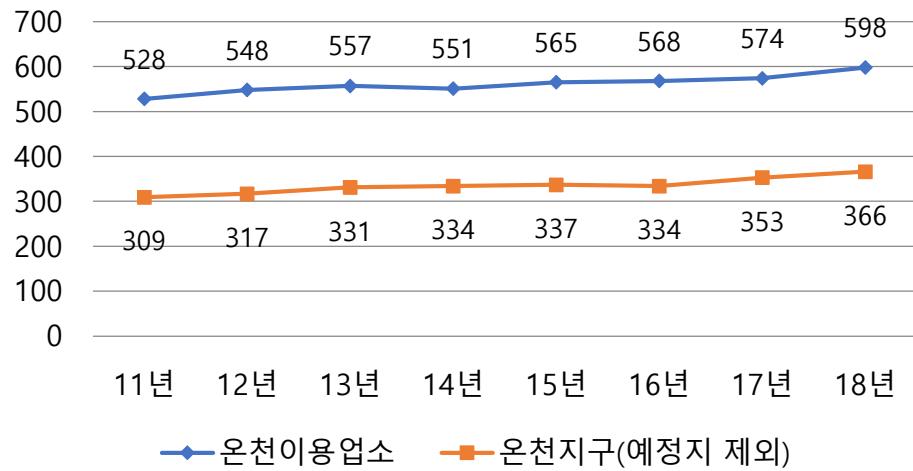


카라칼라 황제(211~217)때 조성
최대 8,000명 수용 규모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미술관, 정
원 등을 보유한 서민의 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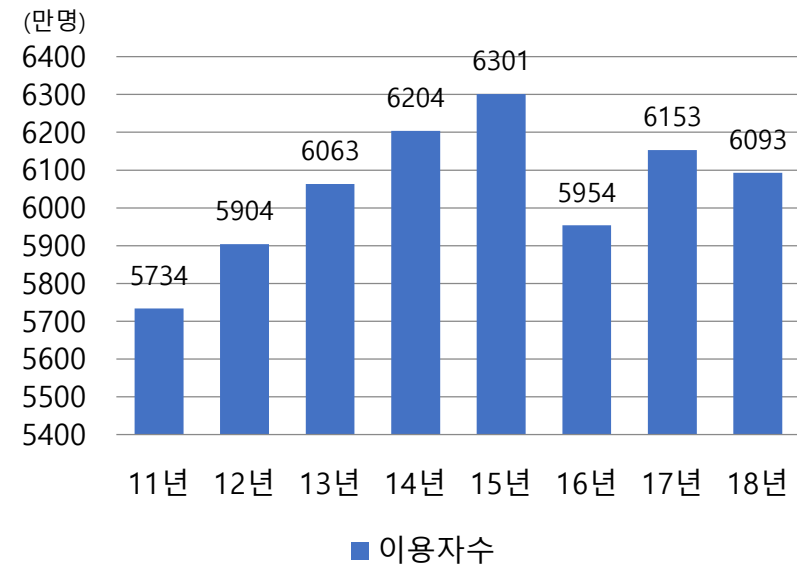
2. 온천현황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이용업소 증감현황



전체 온천이용시설은 완만한 증가세

온천이용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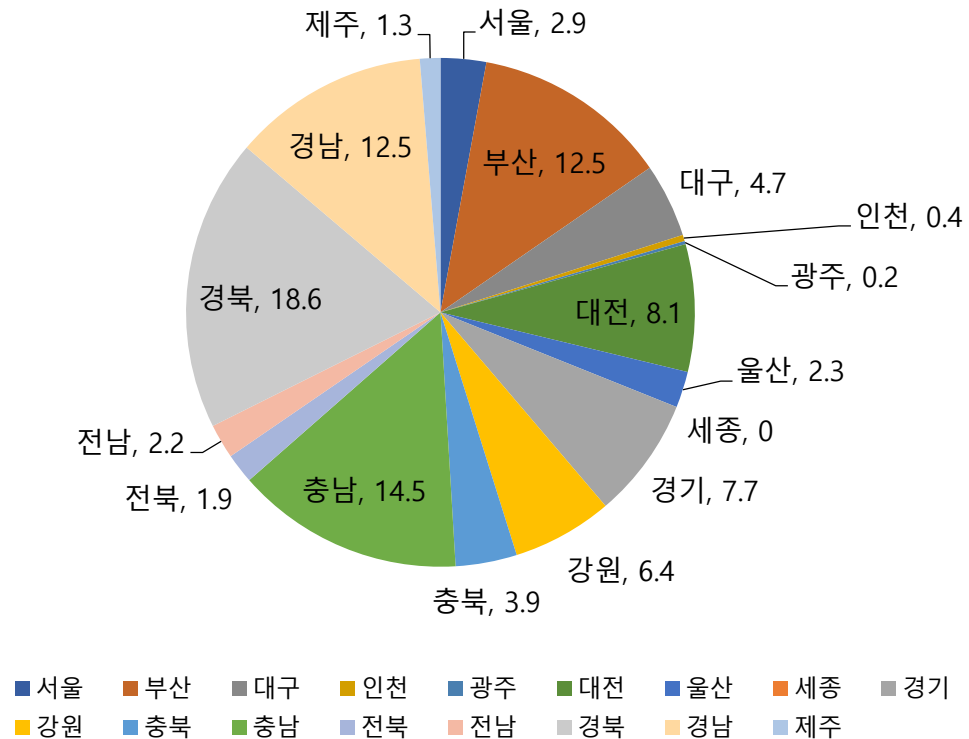


전체 온천이용인원은 정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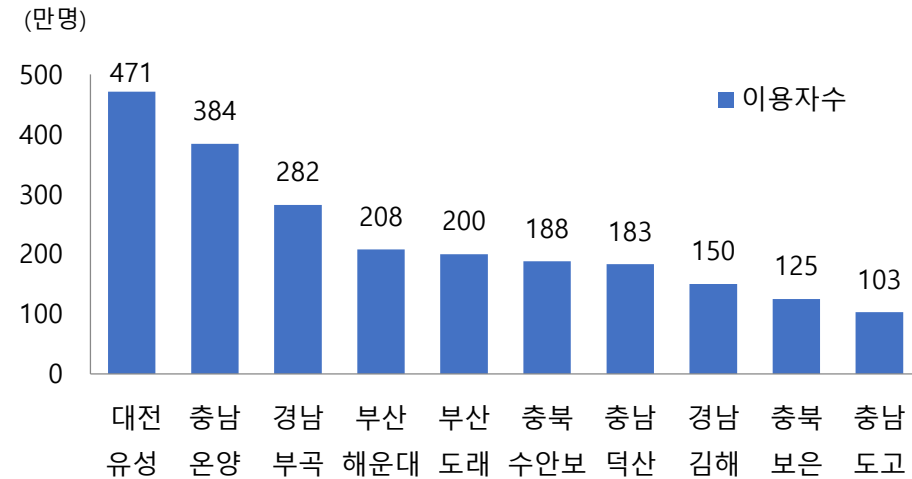


2. 온천현황

시도별 온천이용자 분포율(%)



전국 지구별 온천이용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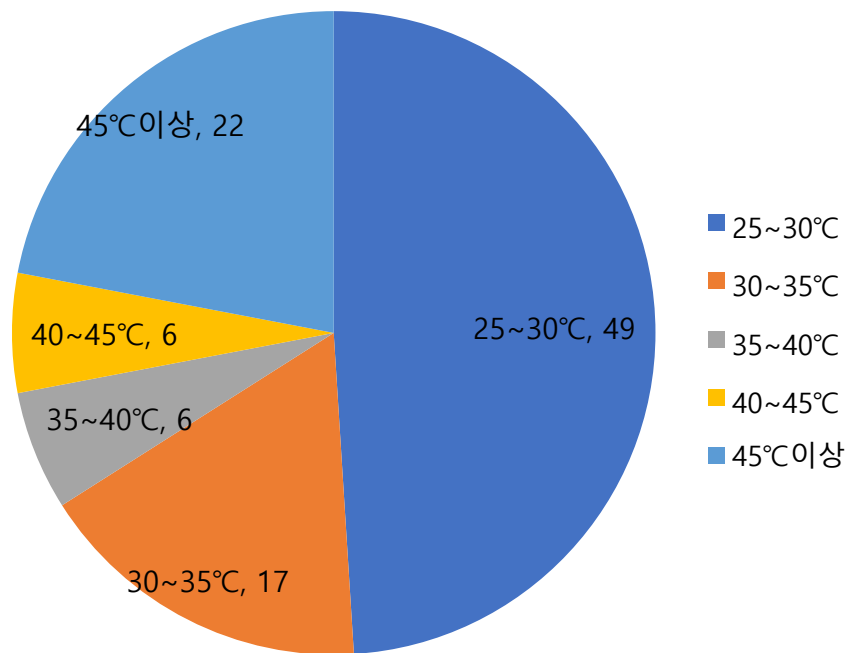
증가: 유성(5→1위), 해운대(10→4위), 김해(등외→8위)
감소: 덕산(2→7위), 도고(4→10위), 아산(6→등외)

* '13년과 '18년 이용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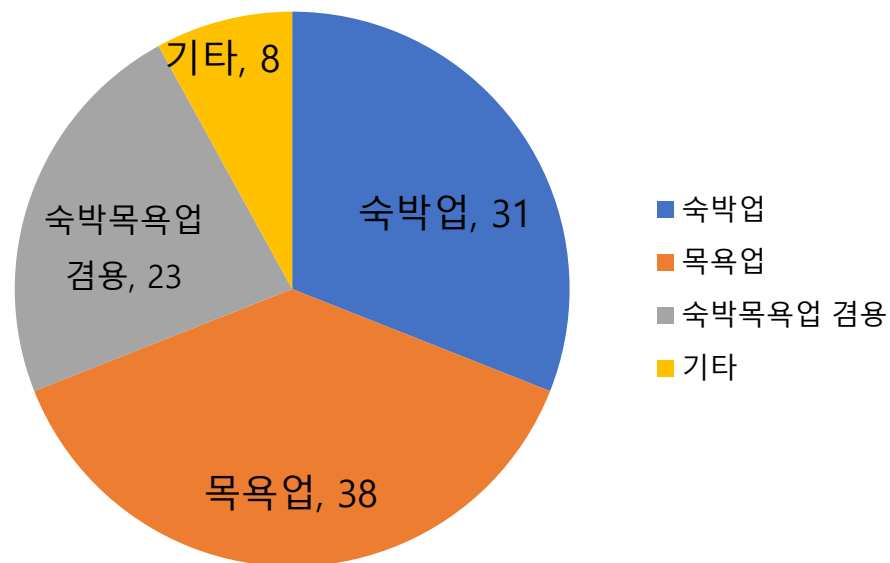


2. 온천현황

온천수 온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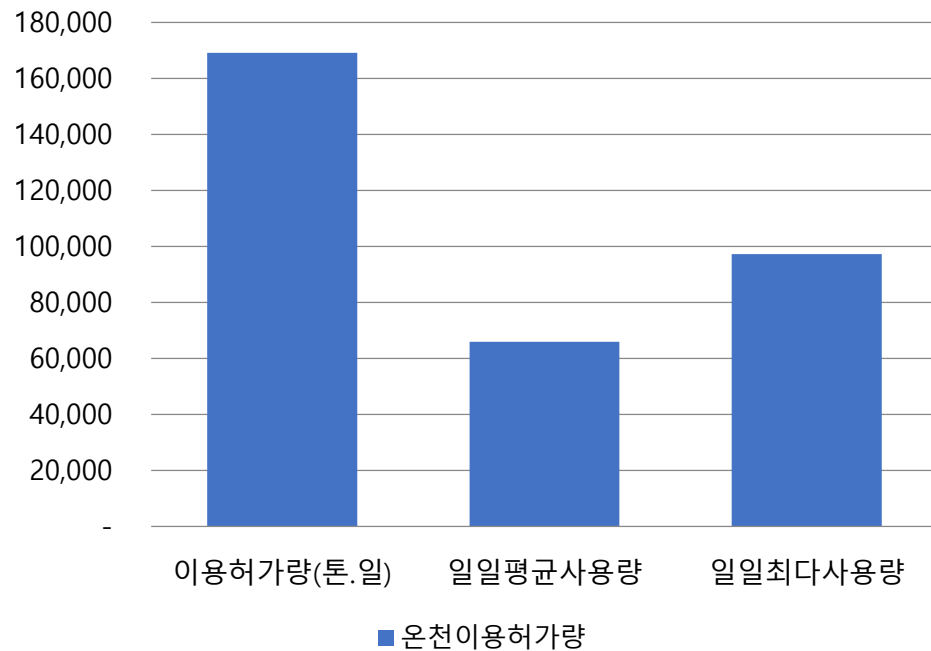
업종별 비중





2. 온천현황

온천이용허가량



그 외 현황

- ◆ 온천지구 : 총 366개 지역
 - 온천원보호지구*(136개), 온천공보호구역(230개), 신고수리(100개)
 - * 온천원보호지구 면적 : 30,000㎡ 이상
- ◆ 온천이용시설 : 총 598개 업소
 - 연평균 10개 정도 증가
 - * ('10년) 516개 → ('18년) 598개



3. 온천관련 주요 동향 - 온천지구 취소사례



☑ 영종도 온천 개발 물거품
(19.6월, 인천일보)

장기간 사업 추진 미뤄져 '보호지구 해제'
...전국 첫 사례

☑ 27년 끝던 덕정온천 개발 결국 마침표
(19.5월, 경인일보)

적정수온보다 낮아 사업성 떨어져...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폐지 절차"

☑ 화성시, 병점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9.7월, 뉴스핌)



3. 온천관련 주요 동향 - 온천개발 실패 사례

jtbc 뉴스

[밀착카메라] 수십년째 '개발 중'...애물단지 된 온천지구



('19.3.27, JTBC)

◆ 강원 영월

1989년 온천 발견, 민간업체에 개발을 맡겼으나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 전북 완주

1998년 축구장 18개 크기의 부지를 온천 보호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시행사의 잇따른 부도로 여전히 개발 미이행 중

전국에 온천 등록지는 360곳
이 중 개발중인 곳은 1/3인 120곳

→ 2년 이상 미개발시 지자체는 온천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법§10) 실제취소 사례를 찾기는 어려움



3. 온천관련 주요 동향 - 온천목욕장 수질



✓ 레지오넬라증* 급증 ('15년 45명 → '18년 296명)

*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폐렴 등 호흡기 감염증, 온천에서 연 평균 14명 정도 발생

일본, 온천이나 목욕장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 욕조 청소, 소독 등 환경관리 강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7월)

- ◆ 염소농도 기준 추가(0.2~0.4mg/L)
- ◆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 이하 검출
- ◆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
- ◆ 욕조수 온도·염소농도·욕조수 관리사항 게시



3. 온천관련 주요 동향 - 온천공 방치로 인한 오염



제주도내 13개 온천공 개발 승인 취소 후 장기 방치

일부 온천공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지만 온천법상 강제규정이 미흡하여 장기간 방치가 지속되는 실정임

→ (제주도) 굴착허가 취소자 등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건의



3. 온천관련 주요 동향 - 온천수 산업화



아산온천-온궁(여성화장품세트)



아산-온궁(마스크팩)



아산-온궁(스파케어세트)



충주수안보온천-에네스티 (여성화장품세트 I)



충주수안보온천-에네스티 (여성화장품세트 II)



충주수안보온천-에네스티 (클린징폼)



3. 온천관련 주요 동향 - 웰니스 관광 활성화



부산, 스파랜드 센텀시티
18개의 다양한 온천탕, 사우나,
피부관리 스파 프로그램



대구, 리조트 스파벨리
온천, 찜질방, 한방풀,
동·식물원 테마파크,
편백나무, 황토벽돌 호텔



전주, 스파라쿠아 전주온천
탄산수소 온천수
리조트형 찜질시설
한옥형 시설



아산, 도고 파라다이스
유황온천수,
수중 프로그램 운영
(단국대 연계)

4. 국내 우수사례 - 충남 아산



- ◆ 온양 온천, 도고 온천, 아산 온천 보유
- ◆ 연 700만명 이용, 중탄산나트륨 및 유황(도고) 성분
- ◆ 온도 : 약 27~49 °C, 심도 : 200~600m
- ◆ 사용공 40여개, 이용허가량 10,528톤

- ◆ 자체 온천공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 온천의학연구센터, 온궁한의원 운영
- ◆ 온천뷰티체험센터, 온천건강프로그램 운영
- ◆ 온천수 브랜드 '온궁'산자부장관 표창
- ◆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조성 계획
- ◆ 도고 파라다이스, '19년 웰니스 관광지 선정

4. 국내 우수사례 - 전북 고창



-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월암리·월산리 일원
- ◆ 연 64만명 이용, 게르마늄 성분 풍부
- ◆ 온도 : 25.6 °C, 심도 : 500~700m
- ◆ 이용 허가공 6공, 이용허가량 1,893톤(일평균 418톤)

- ◆ 온천발견 신고(89년) 후 사업자 부도로 미개발
- ◆ 서울시니어스타워(주)와 온천개발 MOU 체결 ('08년, 고창군, 전북도)
- ◆ 석정휴스파 개장('12.7월)
 - 온천 휴양병원(208병상), 황토 펜션, 노인 복지주택, 골프장 등 조성
- ◆ 201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

4. 국내 우수사례 - 대전 유성



- ◆ 대전 유성구(92년 공영개발), 이용업소 72개소
- ◆ 연 471만명 이용, 중탄산나트륨 성분
- ◆ 평균온도 : 43 °C, 심도 : 100m
- ◆ 온천공 31공, 이용허가량 10,255톤/일(사용량 3,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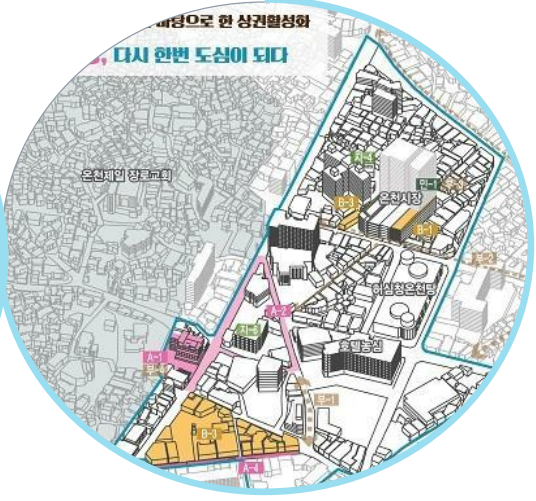


- ◆ 이용인원 증가 : 13년 230만명 → 18년 471만명
- ◆ 힐링온천 조성 : 유흥업소 감소, 카페 증가 (수치료병원에 온천수 공급, 3개소)
- ◆ 매년 유성온천 문화축제 개최
 - 한방족욕장 조성, 온천 뷰티체험, 온천 수치료체험
 - 노노케어 건강관리사업(경로당 방문 족욕 체험)
- ◆ 대전대와 온천수화장품 개발(5개사)

4. 국내 우수사례 - 부산 동래



- ◆ 부산 동래구, 이용업소 27개소
- ◆ 연 200만명 이용, 염화나트륨, 중탄산나트륨 성분
- ◆ 평균온도 : 61 °C(최고 68 °C), 심도 : 198m
- ◆ 온천공 30공, 이용허가량 3,339톤/일



- ◆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지봉유설 기록
- ◆ 동래온천 용왕대제 매년 개최
- ◆ 족욕장, 스파운슬길 조성
-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2회 개최
-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온천수화장품, 온천생수, 열에너지 활용 등 추진

5. 해외 우수사례



독일, 바덴바덴 (Baden-Baden)

'유럽의 여름수도'라는 별칭의
세계 최대 온천휴양지

체코, 카를로비 바리 (Karlovy Vary)

'카를 왕의 온천'이라는 뜻의
온천타운

헝가리, 부다페스트 (Budapest)

로마 시대부터 유명했던
물의 도시, 아퀸쿰(Aquincum)

프랑스, 비쉬·아벤느 (Vichy, Avene)

메디컬 스파, 온천수 화장품
선두주자

일본, 벳부 (Beppu)

일본 최대의 온천 관광지
100곳이 넘는 공공 온천탕 보유

5. 해외 우수사례 - 독일 바덴바덴



'온천중의 온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유서 깊은 스파타운

연간 30만명 이용하며 관광객이
약 30%로 온천 관광수입이 시(市) 예산의 80%

대부분 류머티스, 관절염 등 치료 위해 온천 이용
- 노년층이 1일 2~3시간씩 약 1~2달 이용하며,
정형외과 의사 치료 병행

매년 온천의료 전시 및 학회 개최



프리드리히 온천

로마 목욕탕 터 위에 만들어져
건물 지하는 박물관 형태로
공개 되는, 2천년 역사의 온천



카라칼라온

카라칼라 황제가 온천을 즐겼던
곳으로 지하 1,800m에서 나오는
염화나트륨이 풍부한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천시설 마련

5. 해외 우수사례 - 체코 카를로비 바리



‘카를 왕의 온천’이란 이름의
보헤미아 온천 삼각지대

물에 몸을 담그는 것 뿐만 아니라
시음 치료*로도 유명

* 79종에 달하는 다양한 성분 함유

온천 주치의들은 하루 1리터씩 온천수 음용시,
소화기능,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

이외에도 머드를 활용한 바디랩(wrapping), 고객
맞춤형 스파 워터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보험을 통해 스파트리트먼트에 대한 의료비 보장



콜로나다
(Kolonada)

- ◆ 음용 가능한 온천수가 나오는 곳으로
누구나 온천물을 받아 마실 수 있음
- ◆ 온천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컵 판매

차가운 온천수 : 이산화탄소 함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움
따뜻한 온천수 : 소화액과 담즙 분비를 완화시켜 진정효과

5. 해외 우수사례 - 헝가리 부다페스트



전 국토의 3분의 2가 온천,
유럽 최대의 온천국가

전국적으로 1천 5백여개의 온천,
수도 부다페스트에만 118개의 온천이 있음

고대 로마, 오스만투르크의 영향으로 온천문화 발달

19~20세기 들어 온천수의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소개되면서 온천치료* 컨셉트 접목

*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중추신경장애나 외상에 의한
운동장애 등에 대해 물을 이용해 치료



세체니 온천
(Széchenyi)

- ◆ 19세기에 지어진 국민욕장
- ◆ 18개의 수영장, 15개의 온천수 음용대와 함께 헬스클럽, 사우나 등을 갖추고 있음
- ◆ 마사지, 수중체조 및 물리치료가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으로 온천치료요법이 가능

* 칼슘, 마그네슘, 탄산수소, 황산 및 나트륨이 풍부하여 만성 척추질환, 관절염, 퇴행성 질환, 외상 후 재활치료에 효과

5. 해외 우수사례 - 프랑스



온천을 활용한 메디컬 스파의 선두주자

아벤느, 비쉬 등은 피부질환 중심
수치료 센터, 병원 운영

프랑스 3대 온천(라로슈포제, 아벤느, 비쉬)

라로슈포제: 셀레늄* 풍부, 습진·아토피 피부염 치료

* 항산화·항염증·피부노화 방지 효과/11당 53μg

아벤느: 칼슘·마그네슘 풍부. 30여 년간 피부과학 연구소
운영(피에르 파브르, 더모코스메틱 개념 창시)

비쉬: 피부 치료 온천수의 여왕인 루카스 온천수*로 유명

* 미네랄 함량이 11당 5.1g



Avène



Vichy



Uriage



La Roche
Posay

온천수 화장품

- ◆ 아벤느 : 피부가 마시는 온천수
- ◆ 비쉬 : 재현해내기 어려운 자연의 기적
- ◆ 유리아주 : 피부와 가까운 물, 천연 온천수
- ◆ 라로슈포제 : 전세계 피부전문가가 선택한
민간 피부 솔루션

5. 해외 우수사례 - 일본 벳부



일본 최대의 온천용출지

100여 개의 공공 온천탕과
온천 의료센터, 연구소 보유

별칭 : 벳부하토* 別府八湯

* 벳부 온천을 비롯, 인근의 마와키 온천,
묘반 온천, 호리타 온천, 간나오 온천 등을 지칭

다양한 기능의 온천욕과 모래찜질, 증기찜질 등을
즐길 수 있는 온천 순례 유행

- 시영·공공온천, 료칸 등 총 144개소 참여

지옥(온천) 순례, 온천수 두부·비누·연고 등 인기



지옥(地獄) 순례

- ◆ 바다지옥 : 황산철이 녹아 코발트 블루색 생성
98°C, 수심 200m
- ◆ 피연못지옥 : 붉은 점토가 열탕에 녹아서 분출됨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지옥
- ◆ 회오리지옥 : 30분 간격으로 20m 이상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간헐천

이외에 대머리지옥, 솔지옥, 산지옥, 악어지옥,
하얀 지옥, 금룡지옥 등 총 9개의 온천으로 구성

감사합니다